

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(타사사례) 대 처 방 법

시 정 명 령 서		결 근로감독관 건설산업지 도과 과장	재 전결 2022. 12. 12.
62232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87 (하남동 1278) 경서빌딩 701호 /전화 062-975-6460 /전송 0508-8230-1089 /담당자 송민호 songminho94@korea.kr			
문서번호	건설산업지도과-7583		
사업장명			
소재지			
관련 법 조항	명 령 내 용	조치기한	
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	관리감독자는 흙막이가시설 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업무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기한 내 보고하시기 바람. -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- 재료·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-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	2022. 12. 21.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지정 및 서명 자재 및 공기구 반입 점검 당사규정 11.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전승인제 참조 일일순회점검 관리감독자 패트롤 점검 실시->기록유지	
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	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 등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·부착하여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(우즈베키스탄인, 베트남)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나라의 언어로 안전보건표지(우즈베키스탄어 2개, 베트남어 2개)를 설치하고, 그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기한내 보고하시기 바람	2022. 12. 21. 외국인 근로자 있는 현장 해당언어 안전수칙, MSDS 표지판부착	
2022. 12. 9. 실시한 패트롤 감독 결과 지적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사항 중 근로자의 안전·보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니, 이 명령서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고,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, 조치결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<u>2022. 12. 21.</u>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22. 12. 12.			

작업계획서 작성시 1)반입장비 2)주요자재 3)공기구에 대한 목록정리하여 사진과 “육안검사 결과 양호/불량”으로 기록 유지하고, 특별교육시 보호구 목록과 착용여부 서명 대장 별첨 관리 필요

광주지방고용노동청
